



청년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방안

청년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방안

연구진

김봉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홍근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1. 연구배경	04
	2. 연구목적	05
II	청년수당제도 관련 이론적 배경	
	1. 청년수당제도 관련 논의	06
	2. 청년수당제도 도입 관련 쟁점사항	11
III	청년수당제도 도입·운영 사례	
	1.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13
	2. 시사점	20
IV	충청북도 청년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1. 청년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22
	2. 시나리오별 재정부담 규모 분석	26
V	요약 및 정책제언	30
	참고문헌	33

I

서론

1. 연구배경

-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저숙련·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15세~29세 인구의 실업률은 8.9%로 OECD 37개국 중 20위로 지난 10년간(2009~2019) 0.9%p 증가하였음(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20)
 - 특히, 금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전에 없던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2020년 6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6.8%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음
-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및 일자리지원정책들에 대하여 많은 한계점들이 지적되어 왔음
 -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봤을 때 청년기에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 일자리지원정책의 경우, 고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훈련 및 임금보조 위주의 지원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어 청년들의 단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함
-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 중 하나로 청년수당제도가 관심을 받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청년수당제도는 일반적으로 청년층에 속하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소득수준 등의 지원조건 하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과 연관된 활동의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2016년 서울시에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2020년 1월 현재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임
-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취업 청년층의 지원명목으로 청년수당제도의 도입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충북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청년수당제도 도입 시 충북의 재정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 사회수당제도 및 기본소득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쟁점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청년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통해 충북 이외의 지역에서 청년수당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
 -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제도를 충북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시행했을 경우 예상되는 재정효과 분석
 - 충북의 재정현실을 반영한 충북형 청년수당제도 제시

II

청년수당제도 관련 이론적 배경

1. 청년수당제도 관련 논의

현 사회보장제도 하에서의 청년수당제도 위치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서비스를 지칭함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임
 -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임
 -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표 1>에 각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대상, 재원, 그리고 유형이 나타나 있음
 - 사회보험은 노후 빈곤과 같은 핵심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나 정부의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을 포함함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충적 소득보장의 성격을 띠는 제도로, 조세를 재원으로 운용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는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인 욕구 증진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성격을 갖는 제도로, 아동이나 노인 등 인구학적으로 구분된 대상에 대하여 조세나 이용료를 이용하여 운용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존재함

• <표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유형 •

구분	성격	대상	재원	유형
사회보험	핵심적 소득보장	보험 가입자	각출/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 의료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등
공공부조	보충적 소득보장	저소득층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등
사회서비스	사회적 요구에 따른 추가적 지원	인구학적 구분 대상	조세/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 교육서비스 • 노인서비스 • 고용서비스 • 장애인서비스 • 아동서비스 등

출처 : 조권중 외(2017) 재구성

- 현 사회보장제도 하에서는 넓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함
 - 사회보험제도는 중산층 이상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저소득층을 배제하고 있고, 공공부조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노대명 외, 2009), 사회서비스의 경우 제도의 성격상 소득보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이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및 저소득층임을 의미함(노대명 외, 2009)

- 2019년 기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빈곤층 인구수는 약 70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¹⁾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²⁾
 - 사회수당은 자산조사나 수급에 따른 조건부과 없이 특정 인구집단 또는 전체 인구에게 보편적 또는 준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지칭함(노대명 외, 2009)
 - 사회수당은 보완적 소득보장제도이고 시민권에 따라 보장되는 시민권적 소득보장 제도이며, 조세에 기반한 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학적 구분에 따라 아동보육수당, 노인기초연금, 장애아동수당, 농민수당 그리고 청년수당 등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고 있음
- 정리하자면, 현 사회보장체계 하에서는 넓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써의 사회수당이 확대되고 있고, 청년수당은 이러한 사회수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기본소득제도

- 청년수당을 포함한 사회수당은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기본소득제도는 인구집단의 구분 없이 급여를 전체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회수당으로 생각할 수 있음³⁾

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811/96915340/1>

2) 강혜규 외(2019)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 사회보장제도의 구분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현 사회보장제도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 중 41%가 사회수당을 별도의 제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3) 사회수당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통합하려는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노대명 외, 2009)

- 일부 기본소득론자들은 사회수당이 기본소득제도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조권중 외, 2017)
- 따라서 기본소득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청년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기본소득제도는 ①생산의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득불평등 완화, ②선별적 소득지원정책에 따른 복지함정(welfare trap) 문제 해결, ③기존 소득보장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배경 하에서 논의가 되고 있음
 - 이론적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로봇이 도입됨에 따라 증가하여 소득증대로 이어 지지만 이러한 과실이 전체 노동자들이 아닌 소수의 엘리트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Hoynes and Rothstein, 2019)
 - 복지함정은 복지 수혜자들이 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선호하여 실업상태에 머무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선별적 소득지원정책은 노동시장참여 및 소득수준 등에 대하여 조건부적으로 지급되어 왜곡된 인센티브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개인들에 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고, 기존 체계 하에서 수혜자들이 받는 사회적 낙인(stigma)을 해소할 수 있음
- Hoynes and Rothstein(2019)은 기본소득제도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함
 - 기본소득은 다른 소득 없이도 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을 제공해 줌
 - 기본소득은 개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됨(소득 증가에 따른 소멸구간(phase-out)이 없음)
 - 기본소득제도는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서가 아닌,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함
 - 즉, 기본소득제도의 주요특징은 소득보장의 충분성(sufficiency), 무조건성(unconventionality), 그리고 보편성(universality)이라고 할 수 있음⁴⁾

4) 기본소득제도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윤흥식(2017)은 기본소득제도를 무조건성, 보편성, 정기성, 개인단위, 적절성, 지급주체, 그리고 권리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고, raventós(2007)은 보편성, 무조건성, 그리고 개별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제도의 특성을 만족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표 2>는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제안이 된 적이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나타내고 있음⁵⁾
 - 스위스에서 제안된 기본소득제도 안이 유일하게 기본소득제도의 모든 주요 특성을 충족하는 형태로 간주되지만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음

• <표 2> 국외 기본소득제도 사례 •

사례	주요내용	기본소득제도 특성		
		충분성	무조건성	보편성
스위스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2,500프랑 지급	○	○	○
미국 알래스카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연간 1,000~2,000달러 지급	△	○	○
미국 스타턴	18개월 동안 약 100가구에 대하여 연간 6,000달러 지급	x	○	○
미국 실리콘벨리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21~40세 개인에게 연간 12,000달러 지급	△	○	x
캐나다 온타리오	18~65세 사이의 빈곤층 주민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드 지원	△	x	○
핀란드	실업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 간 매월 560유로 지급	x	x	○

출처 : 전성만·조기현(2020), 수정·보완

-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 중임
 - 기본소득제도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체계 하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보완적인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회보장

5)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도 기본소득제도의 한 형태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임

제도를 기본소득제도로 통합할 것인지, 기본소득제도의 형태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제발전상태에 따라 기본소득제도가 가지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세대 간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기본소득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세력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조권중 외, 2017; 윤희식, 2017; Hanna and Olken, 2018; Banerjee et al., 2019; Hoynes and Rothstein, 2019; Daruich and Fernández, 2020)

2. 청년수당제도 도입 관련 쟁점사항

- 청년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
- 청년수당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어 기존의 지원제도 이외의 새로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볼 경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조권중 외, 2017), 실업 시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받음
 - 경제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복지사각 지대가 더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수당제도를 통해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job mismatch)를 줄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인적자본형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더 효율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청년수당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수당제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선별방식의 공정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음
 - 지원금이 구직활동과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큼
 - 지원금액도 작고 지원기간도 짧으며 구직활동 등의 수급조건 또한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음

- 청년수당제도가 도입될 경우 다른 수당제도 또한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함
- 구직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선별하는 등 수혜자 선별에 있어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없음

· <표 3> 청년수당제도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

찬성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이 목적과 관계없는 활동에 오용될 가능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없는 성장에 따라 청년층에서의 복지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그리고 지원조건 등의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인적자본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선별에 있어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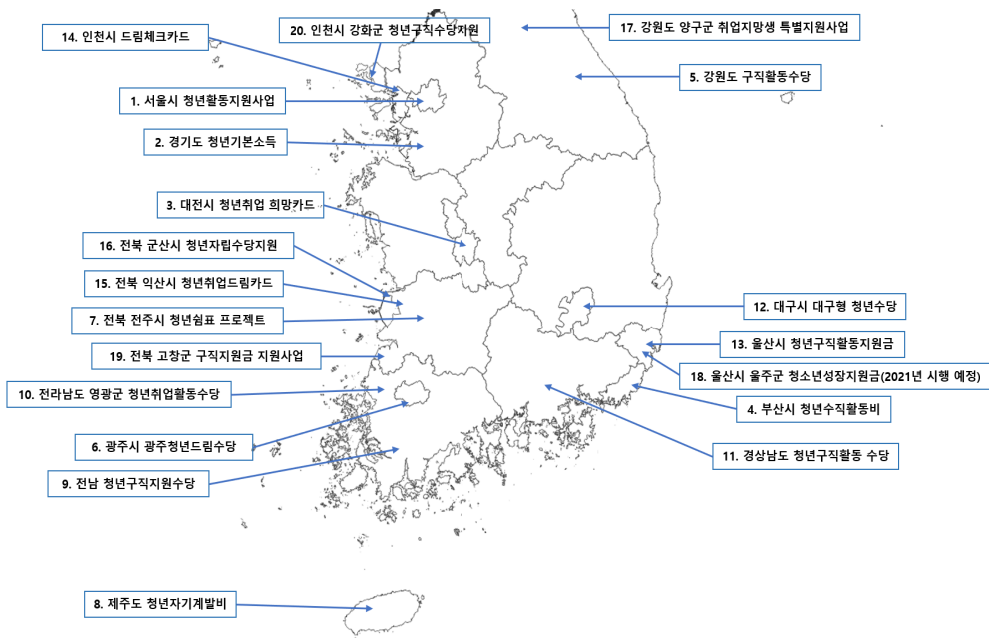
III

청년수당제도 도입·운영 사례

1.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 고용노동부(2020)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사업들이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예정임

· <그림 1>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제도 현황 ·



주 : 2020년 1월 기준
 출처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4개 단체로 가장 많으며, 인천, 울산, 강원, 전남이 각각 2개 단체인 반면 세종, 충남, 경북 그리고 충북에서는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이 12 단체이고 기초가 8 단체로 광역에서 청년수당제도를 더 많이 시행하고 있음⁶⁾
- <표 4>에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 현황과 유형 내 타 단체들과의 비교결과를 나타내고 있음⁷⁾
 -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단체 중 서울, 부산 등 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8개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강원, 전남을 포함한 나머지 4개의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8.2%로(14/17),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 전남에 비해서는 높으나,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세종, 충남, 경북보다는 낮은 수준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유형 내 타 단체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광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단체들이 청년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기초의 경우에는 오히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나타냄

• <표 4> 청년수당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및 충청북도 재정자립도 •

단위 : %

지역	광역		지역	기초	
	재정자립도 및 유형 내 순위			재정자립도 및 유형 내 순위	
	재정자립도	유형 내 순위		재정자립도	유형 내 순위
서울	77.9	1/17	강원 양구	8.1	10/21
부산	45.3	6/17	전북 고창	7.5	18/20

6) 광역이 자치단체보조 형식으로 시군과 함께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광역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7) 재정자립도=(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임. 지방자치단체별 유형은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기초자치단체 유형 분류 결과'를 따름

광역			기초		
지역	재정자립도 및 유형 내 순위		지역	재정자립도 및 유형 내 순위	
	재정자립도	유형 내 순위		재정자립도	유형 내 순위
대구	41.1	7/17	전북 군산	18.7	13/19
인천	51.8	3/17	전북 전주	26.9	15/16
광주	37.4	8/17	전북 익산	16.8	16/19
대전	37.1	9/17	전남 영광	10.5	15/20
울산	46.3	5/17	울산 울주	37.7	1/21
경기	51.2	4/17	인천 강화	14.5	15/21
강원	27.6	15/17			
전남	24.0	17/17			
경남	33.9	11/17			
제주	32.9	12/17			
충북	28.2	14/17			

주 : 재정자립도는 2020년 당초 기준임. 지방자치단체별 유형은 '2020년도 지방재정분석 기초자치단체 유형분류 결과'를 따름.
 세종의 재정자립도는 59.3%(2/17),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5.1%(16/17),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4.7%(10/17),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8.7%(13/17)임

출처 : 지방재정 365, 행정안전부

- <표 5>는 지방자치단체 별 청년수당제도의 세부내용을 나타내고 있음⁸⁾
 - 대부분의 청년수당제도가 졸업 후 2년 이상 및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격지원 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만 18~34세 사이의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원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전북 익산시, 강원 양구군, 그리고 울산 울주군임
 - 경기와 울산 울주군은 소득에 대한 지원요건 뿐 아니라 특정 연령에 대하여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는 특정 활동 참여에 따른 지원금을 일회성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 지원규모의 경우 광역에서는 경기도가 약 150,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울산이 약 160명으로 가장 작은 지원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8) '지원 자격 대상 인구' 및 '지원 자격 충족 인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 2절에 나타나 있음

· <표 5>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제도 세부내용 ·

지역	사업명	지원 자격		인구 수	
		소득	연령	지원 자격 대상 인구	지원 자격 충족 인구(예상)
서울	청년활동 지원사업	150% 이하	만 19~34세	2,631,495	55,893
부산	청년구직 활동비	150% 이하	만 18~34세	783,044	17,725
대구	대구형 청년수당	150% 이하	만 19~34세	590,057	10,365
인천	드림 체크카드	150% 이하	만 19~39세	979,206	22,788
광주	청년드림수당	150% 이하	만 19~34세	380,416	6,166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150% 이하	만 18~34세	387,079	8,942
울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150% 이하	만 18~34세	279,874	5,082
경기	청년기본소득	없음	만 24세	183,007	183,007
강원	구직활동수당	150% 이하	만 18~34세	335,438	5,427
전남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	150% 이하	만 18~34세	384,265	4,864
경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150% 이하	만 18~34세	741,381	13,131
제주	청년자기계발비	120% 이하	만 19~34세	154,865	1,891
강원 양구	취업지망생 특별지원사업	없음	만 19~34세	5,830	56
전북 전주	청년심포프로젝트	150% 이하	만 18~34세	169,111	1453
전북 군산	청년자립수당 지원	120% 이하	만 18~34세	57,906	393
전북 익산	청년취업 드림카드	없음	만 18~34세	67,188	421
전북 고창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150% 이하	만 18~34세	8,983	123
전남 영광	청년취업 활동수당	150% 이하	만 18~45세	16,404	310
인천 강화	청년구직수당지원	150% 이하	만 19~39세	13,655	311
울산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없음	만 18세	2,648	2,648

지역	사업명	지원 금액	지원기간	지원규모	세출분야/부문	지원형태
서울	청년활동 지원사업	50만 원	6개월	30,000명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직접수행
부산	청년구직 활동비	50만 원	6개월	2,000명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직접수행
대구	대구형 청년수당	30만 원/ 150만 원	1회 지급	1,466명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직접수행
인천	드림 체크카드	50만 원	6개월	320명	사회복지/노동	출연(출자)
광주	청년드림수당	50만 원	5개월	1,120명	교육/고등교육	직접수행
대전	청년취업 희망카드	50만 원	6개월	2,500명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기타
울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30만 원	6개월	160명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산업·중소 기업 일반	민간보조
경기	청년기본소득	25만 원	분기지급	150,000명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자치단체보조 (도 70%)
강원	구직활동수당	50만 원	6개월	2,000명	사회복지/노동	직접수행
전남	청년구직활동 수당지원	50만 원	6개월	850명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산업·중소 기업 일반	자치단체보조 (도 90%)
경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50만 원	4개월	3,000명	사회복지/노동	기타 (도 40%)
제주	청년자기개발비	50만 원	6개월	400명	사회복지/노동	직접수행
강원 양구	취업지망생 특별지원사업	30만 원	3개월	30명	사회복지/노동	민간보조
전북 전주	청년심포프로젝트	50만 원	3개월	300명	사회복지/노동	직접수행
전북 군산	청년자립수당 지원	50만 원	6개월	100명	사회복지/노동	직접수행
전북 익산	청년취업 드림카드	30만 원	6개월	200명	사회복지/노동	직접수행
전북 고창	구직지원금 지원사업	50만 원	2개월	150명	사회복지/노동	-
전남 영광	청년취업 활동수당	50만 원	6개월	50명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기타
인천 강화	청년구직수당지원	50만 원	6개월	50명	-	-
울산 울주	청소년 성장지원금	25만 원	분기지급	2,100명	-	-

주 : 2020년 1월 기준, 대구의 청년수당 지원 금액 및 지원규모는 상담연결(30만 원) 1,000명과 진로탐색, 일경험(150만 원) 466명으로 구성. 경기는 도비 70%, 시군비 30%, 경남은 도비 40%, 시군비 60%, 전남은 도비 90%, 시군비 10%임.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상의 사업명을 인용. 지방재정 전문통계에서 광주, 울산, 강원의 청년수당사업은 상위사업의 일부분으로 각각의 상위사업은 '청년역량강화및자립지원', '청년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임. 대전의 지원형태는 공기 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0)임. 전남 영광의 지원형태는 기타보상금(301-12)임. 전북 고창의 지원형태와 인천 강화에 대한 세출부문/분야 및 지원형태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음. 인천 강화의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은 인천의 값 이용. 전남 고창과, 전남 영광의 실업률은 전북과 전남의 값 이용

출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지방재정 365, 행정안전부』,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결과, 통계청』

- 청년수당에 대한 예산분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세출항목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분야 중 노동부문으로 구분한 단체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중 일반행정부문으로 분류한 단체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⁹⁾
- 지원형태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용하는 직접수행 방식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 전남, 경남은 도와 시군이 사업비용의 일부를 각각 일정부분 부담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보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표 5>에 나타난 정보를 이용하여 청년수당제도에 따른 비용이 세출항목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 6>과 <그림 2>에서 살펴보았음
 - 부분별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 2020년 11월 말 기준 예산현액을 이용하였음
 - 청년수당지원 총 금액은 <표 5>에 나타난 지원 금액, 지원기간 그리고 지원규모를 각각 곱하여 도출하였음
 - 예산대비 총 지원 금액 비율은 총 지원 금액을 부문 별 예산으로 나누어 구했음
 - 광역에서 예산대비 지원 금액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전체 사회복지일반 예산인 283억 중 약 26.5%인 75억 원을 청년수당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전체 일반행정 예산인 908억 원 중 약 1.1%인 10억 원을 청년수당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기초의 경우 전북 익산이 6.82%로 예산 대비 가장 높은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 영광은 0.6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충북과 비슷한 청년인구(만 18~34세)수를 가진 광주와 전남의¹⁰⁾ 청년수당제도 예산은 각각 28억 원과 23억 원으로 고등교육 부문과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지원 금액 비율은 9.24%와 2.24%임

9) 고경환 외(2018)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분류가 임의적이어서 지역 간 비교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데이터를 재분류 및 재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언급

10) 2020년 기준 광주와 전남의 만 18~34세 사이의 인구수는 각각 331,341명, 332,023명으로 충북의 326,653명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표 6> 예산대비 청년수당제도 지원 금액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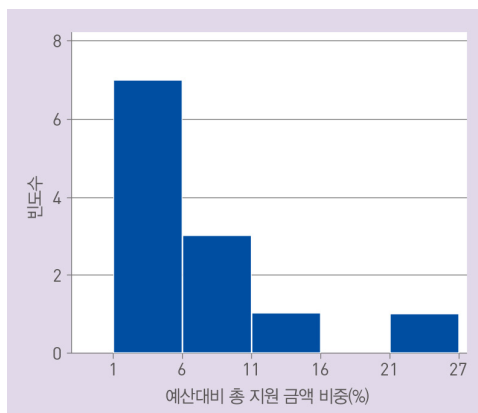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지역	세출부문	부문 별 예산	총 지원 금액	예산대비 총 지원 금액 비중
서울	일반행정	8,282	900	10.87
부산	일반행정	3,649	60	1.64
대구	일반행정	908	10	1.10
인천	노동	390	9.6	2.46
광주	고등교육	303	28	9.24
대전	사회복지일반	283	75	26.50
울산	산업·중소기업 일반	110	3	2.73
경기	기초생활보장	6,935	1,050	15.14
강원	노동	983	60	6.10
전남	산업·중소기업 일반	1,027	23	2.24
경남	노동	336	24	7.14
제주	노동	259	12	4.63
강원 양구	노동	28	0.3	1.07
전북 전주	노동	143	4.5	3.15
전북 군산	노동	187	3	1.60
전북 익산	노동	79	3.6	4.56
전북 고창	노동	22	1.5	6.82
전남 영광	일반행정	225	1.5	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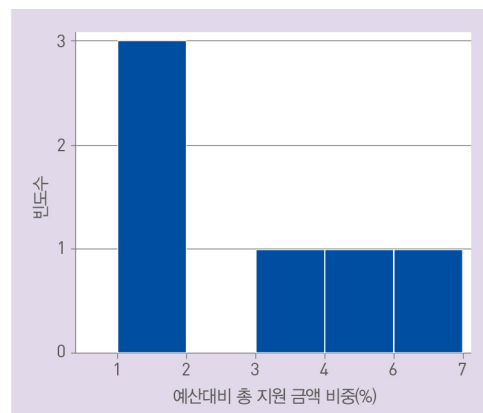
주 : 지원 금액은 (지원 금액×지원기간×지원규모)로 계산한 것으로 예산서의 사업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기, 전남, 경남의 총 지원 금액은 도 보조율을 곱한 값임

출처 : 지방재정 365, 행정안전부

• <그림 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예산대비 총 지원 금액 비중 분포 •



(가) 광역



(나) 기초

- <표 7>에 예산대비 청년수당제도 총 지원 금액 비중에 대한 평균값,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및 세출부문별로 세분화하여 나타내었음
 - 광역의 경우 관측치가 1개 이상이어서 평균값,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노동, 일반행정,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일반임
 - 세 부문의 평균 비중은 노동이 5.08%, 일반행정이 4.54%, 산업중소기업일반이 2.49%로 노동 부문의 평균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세 부문 중 최소비중은 일반행정부문에서 1.1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대비중의 경우에는 일반행정부문에서 10.87%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기초의 경우 대부분 노동부문에서의 세출로 청년수당제도 지원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평균 4.1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최소비중은 1.07%, 최대비중은 7.14%임

• <표 7>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청년수당제도 총 지원 금액 비중 분포 •

단위 : %

부문	지역 구분	광역			기초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노동		5.08	2.46	7.14	4.14	1.07	7.14
기초생활보장		15.14	15.14	15.14	-	-	-
사회복지일반		26.5	26.5	26.5	-	-	-
고등교육		9.24	9.24	9.24	-	-	-
일반행정		4.54	1.10	10.87	0.67	0.67	0.67
산업중소기업 일반		2.49	2.24	2.73	-	-	-

2. 시사점

-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음
-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나타내고 있음

- 12개 단체 중 서울,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한 8개 단체의 재정자립도 순위가 전체 17개 단체 중 10위 안에 해당하고 있음
- 충북보다 재정자립도 순위가 낮으면서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강원과 전남뿐임
- 충북의 경우 다른 특·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17개 단체 중 14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또한 향후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만약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 등 세부조건들은 충북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사한 형태 및 방식으로 청년수당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만 18~34세 사이의 졸업 후·미취업·저소득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특정 기간 동안만 지원해 주고 있음
 - 충북의 경우도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러한 형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청년수당에 대한 세출항목이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상이함
 - 가장 많은 세출항목은 사회복지분야의 노동 부문이나 일반공공행정 및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 여러 세출항목도 존재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청년수당제도에 대한 세출을 어느 분야/부문으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총 지원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됨

IV

충청북도 청년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1. 청년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들 중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들을 바탕으로, 충북의 인구 및 재정현황 하에서 이와 유사한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살펴봄
 - 이를 위해 충북의 세출규모와 청년인구 현황을 파악한 후, 다른 도 지역의 예산대비 지원 금액 비중을 충북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출액과 이에 따른 지원대상의 규모를 계산해 보기로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규모 및 인구규모 등에서의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참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표 8>에 충북의 분야/부문별 세출현황이 나타나 있음
 - 사회복지분야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대한 예산이 818억 원이고 노동 부문에 대한 예산은 262억 원임
 - 충북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중 사회복지일반 부문이 존재하지 않아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았는데, 573억 원으로 나타남
 - 교육 분야 중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은 222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 일반 행정 부문에 대한 예산은 538억 원,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대한 예산은 295억 원으로 나타남

• <표 8> 충청북도 분야/부문별 세출현황 •

단위 : 억 원

세출분야	세출부문	예산
사회복지	노동	262
	기초생활보장	818
	취약계층지원	573
교육	고등교육	222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53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295

주 : 2020년 11월 말 기준 예산현액
출처 : 지방재정 365, 행정안전부

- <표 7>에 나타나 있는 광역에 대한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도 지역의 예산대비 총 지원 금액 비중을 충북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출액을 <표 9>에 나타내었음
 - 사회복지분야 중 사회복지일반에 대한 비중은 <표 8>의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비중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 먼저 가장 많은 세출항목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의 노동부문의 경우, 타 지방 자치단체들의 평균 비중을 충북의 예산에 적용할 경우 약 14억 원을 청년수당제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소 비중과 최대 비중을 적용할 경우 각각 약 3억 원과 약 47억 원의 예산이 청년수당제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평균 비중을 적용할 경우 약 24억 원, 최소 비중을 적용할 경우 약 6억 원, 그리고 최대 비중을 적용할 경우에는 약 58억 원의 예산을 청년수당제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분야/부문의 경우 최소 21억 원에서(교육-고등교육) 최대 124억 원(사회복지-기초생활보장)의 범위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값은 소수 혹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노동과 일반행정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 <표 9> 타 도 지역 사례 적용 시 충청북도 청년수당 예상 세출액 •

단위 : 억 원

세출분야	세출부문	평균	최소	최대
사회복지	노동	14	3	47
	기초생활보장	124	124	124
	취약계층지원	78	78	78
교육	고등교육	21	21	21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24	6	5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중소기업 일반	7	7	8

주 :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에 대한 예산대비 지원 금액 비중은 <표 8>의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을 이용하였음

- <표 10>에 2020년 3/4분기 기준 충북의 만 15~39세 사이의 주민등록인구수와 경제활동인구수가 나타나 있음
 - 인구수의 경우 15~39세는 약 47만 명이고, 15~34세는 약 36만 명, 그리고 15~24세는 약 18만 명임
 - 경제활동인구수의 경우 15~39세는 30만 명, 15~34세는 약 21만 명, 그리고 15~24세는 약 5.5만 명으로 해당 전체 인구 그룹의 약 64%, 55%, 31%를 차지하고 있음¹¹⁾
 - 충북의 만 15~39세에 대한 실업률은 2020년 1분기에 4.3%, 2분기에 4.9%, 그리고 3분기에 4.0%로, 2020년 1/4~3/4분기의 평균 실업률은 4.4%로 나타남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비중은 2018년 기준 29.1%로, 약 70% 정도의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 <표 9>와 <표 10>에 나타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절에서 충북이 각각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청년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하기로 함

11) 경제활동인구수의 경우 각 연령별 인구수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룹별로만 제시를 하였음

• <표 10> 충청북도 청년인구 현황 •

단위 : 명

연령	인구수	그룹 별 인구수			그룹 별 경제활동인구수		
		15~24세	15~34세	15~39세	15~24세	15~34세	15~39세
15세	13,776	176,220			55,000		
16세	15,054						
17세	14,978						
18세	15,790						
19세	18,291						
20세	19,323						
21세	19,113	364,541					
22세	19,566						
23세	20,019						
24세	20,310						
25세	20,219						
26세	20,391						
27세	20,603	471,750					
28세	20,116						
29세	18,506						
30세	17,976						
31세	17,300						
32세	17,326						
33세	17,671	301,000					
34세	18,213						
35세	18,480						
36세	19,788						
37세	21,930						
38세	23,841						
39세	23,170						

출처 : 주민등록인구현황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 시나리오별 재정부담 규모 분석

시나리오 1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활동자에 대한 지원

- 현재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형식으로 연령이나 소득, 졸업 후 기간,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만 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임
 - 만 18~34세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취업을 하지 못한 구직활동자에 대하여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1인당 최대 300만 원)하는 경우를 가정함¹²⁾
 - <표 9>의 노동부문의 예상 세출액을 300만 원으로 나누었을 경우 평균 예상 세출액에 대해서는 467(14억/300백만)명 지원가능, 최소 예상 세출액에 대해서는 100(3억/300백만)명 지원가능, 그리고 최대 예상 세출액에 대해서는 1,567(47억/300백만)명 지원가능함
 - 마찬가지로 일반행정부문의 예상 세출액의 경우 800명(평균), 200명(최소), 1,933명(최대)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함
- 이러한 지원가능 인구수가 전체 지원 대상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실업률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수 정보를 이용
 - 우선 <표 10>에 나타난 만 15~34세의 인구수에서 만 15~17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하여 만 18~34세 경제활동인구수를 추정
 - 만 15~35세의 인구수에서 만 15~17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02%이므로 만 18~34세 경제활동인구수는 약 183,884명($209,000 \times 87.98\%$)으로 계산
 - 이 중 직업이 없는 구직활동자는 2020년 1/4~3/4분기 동안의 만 15~39세 평균 실업률인 4.4%를 이용하여 약 8,091명($183,884 \times 4.4\%$)으로 계산
 - 마지막으로 8,091명 중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70%를 이용하여 5,664명($8,091 \times 70\%$)으로 계산

12) 졸업 후 2년 이상 조건은 생략하였음

- 즉, 노동부문의 경우 평균 예상 세출액을 이용할 때 지원 가능한 467명은 전체 지원 가능 인구수인 5,664명의 8.24%인 것을 알 수 있음
- <표 11>에 나머지 경우를 포함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표 11> 지원 대상 인구수 대비 지원가능 인구 수 비중 •

단위 : %, 명

부문	지원가능 인구수 비중		
	평균	최소	최대
노동	8.24 (467)	1.77 (100)	27.66 (1,567)
일반행정	14.12 (800)	3.53 (200)	34.13 (1,933)

주 : 괄호 안은 지원가능 인구수를 나타냄. 지원 대상 인구수는 5,664명임

- 청년인구수가 비슷한 광주와 전남은 지원 대상 인구수의 약 17%에 대하여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지원 대상 인구수는 광주의 경우 6,505명이고 전남의 경우 4,831명임¹³⁾
 -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광주는 1,12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전남은 850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어, 비중은 각각 17.2%와 17.6%임
 - 충북이 광주나 전남 수준으로 지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 부문의 경우 평균 예상 세출액보다 약 2배 정도 지원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일반행정부문의 경우에는 평균 예상 세출액의 약 25%(6억 원)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 만 15~34세의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광주는 194,000명, 전남은 163,000명임. 만 15~34세 인구수 대비 만 15~17세 인구 수는 광주가 0.129, 전남이 0.136임. 2020년 1/4~3/4분기 만 15~39세의 평균 실업률은 광주가 5.5%, 전남이 4.9%임

시나리오 2 : 일정 연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울산 울주군에서 시행 예정인 형식으로 구직 활동이나 가구 소득에 대한 조건 없이 특정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경기도는 만 24세, 울산 울주군은 만 18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임¹⁴⁾
 - 경기도와 같이 도내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 대하여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경우를 가정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규모인 150,000명은 2019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인구수인 183,007명의 약 82%를 차지함
 - 2019년 기준 충북에 거주하는 만 24세 인구수는 20,803명으로 경기도의 82%를 따를 경우 약 17,000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총 지원 금액은 17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충북이 100% 자체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표 9>에 나타난 노동부문 최대 예상 세출액을 약 4배, 일반행정부문 최대 예상 세출액의 약 3배 정도 늘려야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비용임
 - 만약 충북이 자치단체보조 형식으로 수행을 할 경우 매칭 비율에 따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만약 경기도처럼 도가 70%, 시군이 30%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도에 대한 소요비용이 약 120억 원으로 감소될 수 있고, 경남처럼 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고 한다면 도에 대한 소요비용이 약 68억 원으로 감소될 수 있음
- <표 12>에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였음

14) 경기도의 경우 소득이나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조건이 존재함

• <표 12> 시나리오별 재정부담 규모 분석결과 •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지원 방식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활동자에 대한 지원(일반적 방식)	• 특정 연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경기도 방식)
특징	• 금액에 맞추어 지원규모를 결정	• 정해진 지원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
내용	• 만 18~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구직 활동자에 대하여 50만원씩 6개월 지원	• 충북 거주 만 24세에 대하여 25만 원씩 4분기 지원
지원규모	• 470명~1,900명	• 17,000명
총 지원 금액	• 14억 원~58억 원	• 68억 원~170억 원
관련사항	• 상대적으로 재원부담이 작지만 지원규모 또한 크지 않음	• 100% 자체사업일 경우 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며, 시군과의 매칭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군과의 갈등이 존재

V

요약 및 정책제언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충북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청년수당제도 시행 시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방안들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충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수당제도는 제도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교부세 등을 통해서도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¹⁵⁾
 - 청년수당제도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 활동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식과 특정 연령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구분한 후, 각각의 방식에 따른 지원규모와 비용을 계산하였음
 - 첫 번째 방식의 경우 최소 470명에서 최대 1,900명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14억 원~58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운용 형식에 따라 68억 원~170억 원의 비용으로 17,000명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충북에서 청년수당제도를 시행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구직 활동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5) 전성만·조기현(2020)은 충북의 농민수당제도가 보통교부세 등을 통해 충북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방식 중 두 번째 방식이 사회수당의 이념에 더 부합하는 형식이지만, 중복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경우 첫 번째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판단됨
- 하지만 첫 번째 방식의 경우 역시 청년수당에 대한 세출액을 현재 예산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액시켜야 다른 유사 광역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

정책제언

-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복지 사무 및 재정에 대한 배분 원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 중앙정부가 해야 할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이 해야 할 복지사업은 지방이 책임지는 원칙이 수립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국가최저 수준을 반영한 보편적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아동수당 등)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대로 지역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복지 연계 일자리, 서비스 제공 등)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국고보조사업이 있다면, 사업의 책임 수준에 맞추어 국고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수당제도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수당을 보충적 소득보장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평가할 경우, 청년수당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생계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간주할 수 있음
 - 현재 청년수당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시행하고 있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중복지원 여부 조사를 위한 행정력 낭비, 기관 이원화에 따른 수혜자의 불편함,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확인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청년수당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전담하고, 청년과 관련된 기타 사회서비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년수당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리 및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의 경우 2020년 현재 29개 부서에서 74개 청년지원사업들에 대하여 총 1,000억 원을 지출하고 있음
 - 이 중 다수의 사업들이 목적 및 대상에 있어서 청년수당제도와 유사 및 중복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
 - 청년수당제도 도입 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토·조정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혜규·안수란·이한나·김가희·김용득·최영준·이정은·정은우. (2019). 사회보장 유형 및 범위 명확화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경환·이연화·신정우·강지원·김형수·김승연·신지영·정영애. (2018).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I)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여유진·김태완·원일. (2009).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권중·최상마·장동열. (2018).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서울연구원.
- 윤홍식. (2017).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비판사회정책. (54): 81-119.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0.9.9). 「청년실업률, 10년간 OECD 4.4%p 감소, 한국은 0.9% 증가」.
- Diego Daruich & Raquel Fernández, 2020. "Universal Basic Income: A Dynamic Assessment," NBER Working Papers 2735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Banerjee, A., Niehaus, P., & Suri, T. (2019).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developing world. *Annual Review of Economics*, 11: 959-983.
- Hanna, R., & Olken, B. (2018). "Universal Basic Income versus Targeted Transfers: Anti-Poverty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2(4): 201-226.
- Hilary W. Hoynes & Jesse Rothstein, 2019.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US and Advanced Countries," NBER Working Papers 2553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